

이산화탄소 포집·수송·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소회의원 대표발의)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(안 제39조제3항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이 은 정)